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
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2014년 12월 2일

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
전문위원 김용범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안건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2014년 11월 17일(月), 마포구청장

3. 위원회 회부일자

- 2014년 11월 21일(金)

4. 관련 법령

-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조
-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4조제3항

5. 제정 이유
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및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에 근거하여 구청장의 권한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·판매사업,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, 고압가스 판매소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

6. 주요 내용

-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“가스사업 등”을 규정(안 제2조)
 -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·판매사업, 충전사업자의 영업소
 -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소
-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세부사항을 규정(안 별표 1 및 별표 2)

7.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“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인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.
-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규정으로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조 및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였음.
-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규정으로 “가스사업 등”이란 용어를 상위 법령에 따라 정의 하였음.
- 안 제3조는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안 제4조는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은 상위법령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정함.

검토의견으로는

1999. 3. 20부터 “가스사업 등의 허가 및 신고기준”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, 액화석유가스 판매·충전사업 등에 대한 세부 허가기준을 허가권자가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이 개정(2014. 7. 22 “법률 제12297호”)됨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「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 및 신고기준에 관한 규칙」을 폐지하고, 구청장 허가 사항에 대한 세부허가 기준을 상위 법령과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것으로 적정한 제정으로 사료됨.